

## 6.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(안)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제199-82호 1999. 7. 16.

### 개 정 취 지

국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재산의 활용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, 국민의 권익보호기능을 제고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국민이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.
- 다.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제한경쟁이나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함
- 라.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.
- 마. 분양형 국유지신탁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임대형 국유지신탁의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함.